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소영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35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30일

발 의 자 : 김소영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화숙, 김동식, 김소양, 이동현,
이호대, 이병도, 박기재, 오한아,
김춘례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 이후 장애인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
- 장애인체육 기반 조성 및 장애인체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지원 강화가 요구됨과 동시에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바,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장애인체육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생활체육진흥법」,
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10조제1호라목 중 “서울특별시육상경기연맹”을 “서울특별시육상경기연맹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3호다목 중 “전국체육대회”를 “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<u>서울특별시육상경기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육상장(트랙)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연습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.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별표 3의 전용사용료 면제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나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<u>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 선수의 훈련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<u>서울특별시육상경기연맹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<u>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